

해외건설공사 보증 및 영문보증서 발급

우리 조합원들은 국내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기술력을 보유하게됨에 따라 국내건설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동반하여 플랜트분야 등 설비분야의 해외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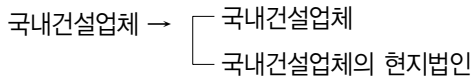
플랜트공사 등 해외설비공사의 수주증가에 따라 계약보증 등 보증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외설비공사의 보증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 설비분야 해외공사 보증서 발급

1996. 7. 1. 우리 조합이 설립되어 영업을 개시한 때부터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국내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해외설비공사에 대하여만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나 2007. 10. 2.부터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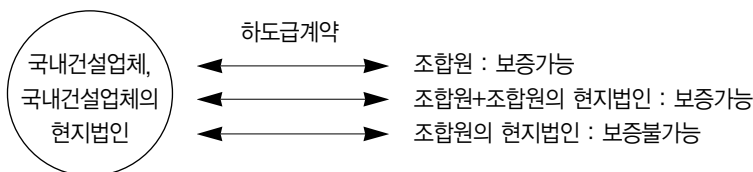
-해외공사 보증종류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금금보증

-보증채권자 범위 확대 :



다만, 조합원의 현지법인 명의로만 설비분야의 해외공사를 국내건설업체 또는 국내건설업체의 현지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조합원(대표회사)과 조합원의 현지법인이 공동으로 하도급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공사를 하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의 현지법인만 내세워 계약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사(대표회사)와 공동하도급의 형태로 계약한다면 계약보증서 등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문표기 보증서 발급

조합원사가 해외공사를 하도급계약하면서 계약상대자인 보증채권자가 계약보증 등에 대하여 영문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간 영문보증제도가 없음에 따라 조합원사에서는 부득이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여 2008. 9. 8.부터 계약보증 등에 대하여 영문으로 표기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문보증서 발급대상 보증종류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금금보증

이에따라 조합원사에서는 보증채권자가 영문보증서를 요구할 때에는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조합의 영문보증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영문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 원화로 표기됨에 따라 일부 보증채권자의 경우는 달러화의 병기를 요구할 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서상의 특기사항란에 달러화 환산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외국정부 또는 국내건설업체 현지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공사를 수주한 때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우리조합의 보증서로는 제출이 불가능하나, 현재까지 외국법인이 직접 발주한 해외공사를 수주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추이를 보아가며 보증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사이버지점 보증수수료등 인터넷 결제절차 변경 안내

저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사이버지점 이용시에 인터넷 실시간 결제방법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금융결제원에서 결제시 사용하는 인증서 선택에 기능을 추가하게 되어 결제방법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전 방식》 공인인증서 창이 먼저 나타나고 비밀번호 입력 확인 후 결제정보창에서 은행, 계좌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변경 후 방식》 결제정보창이 먼저 나타나고 은행, 계좌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후 공인인증서 창이 나타나고 비밀번호 입력 확인

※공인인증서 창에서 해당 인증서의 발급기관이 yesign이 아닌 경우와 없을 경우 '타기관인증서' 란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ankPay 전자지갑 버전 업그레이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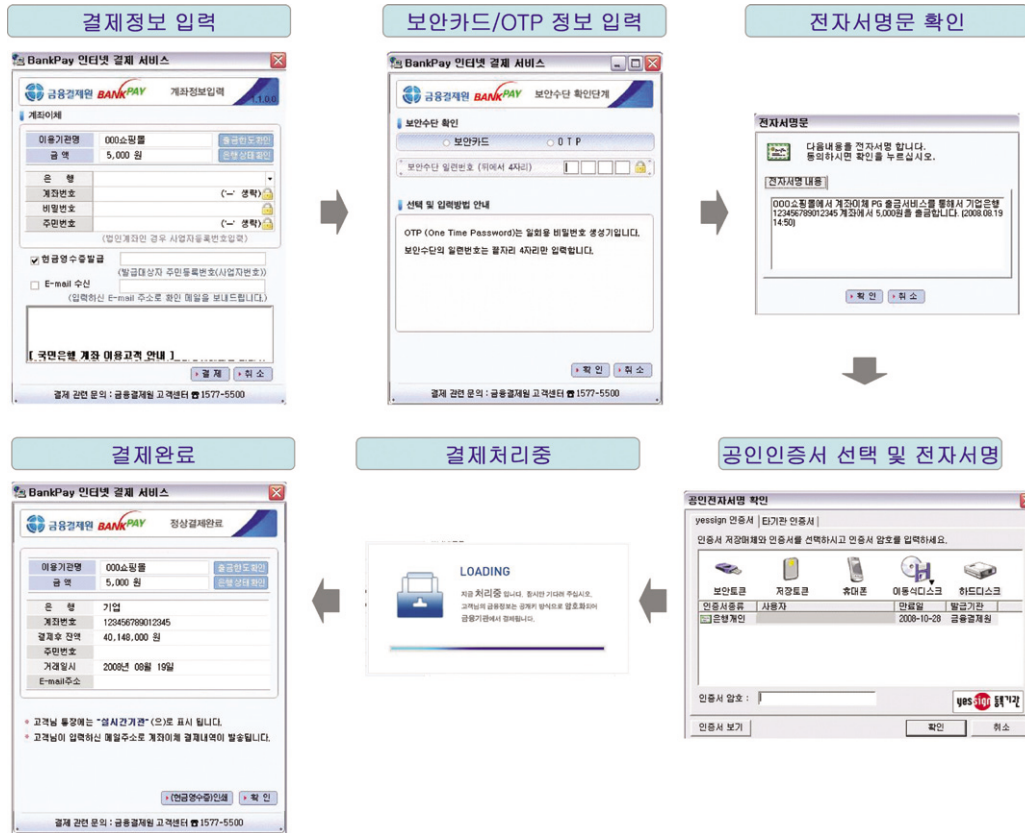
I. 개요

- 인증서 저장매체 추가, 공동코드 개편사항 등을 반영한 BankPay 전자지갑을 배포함 (버전 1.0.1.2→1.1.0.0으로 업그레이드)

II. 변경 사항

1. 결제정보 입력 순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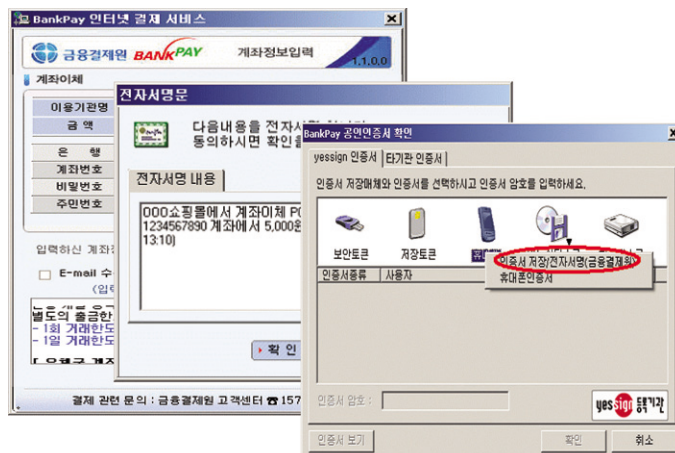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선택 및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의 시점을 결제정보(계좌정보 및 주민번호) 입력 후로 변경함



【 결제정보 입력후 변경 후 결제진행화면 】

2.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추가

- 보안토큰 및 무선단말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보안토큰 및 무선단말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선택 화면 】

3. 출금한도 확인기능 추가

- 이용기관별로 상이한 출금한도를 전자지갑에서 바로 확인 가능함



【 출금한도 확인 화면 】

Ⅲ. 적용 일시

- 2008. 10. 14(화) 23:30부터

Ⅳ. 기타 참고사항

- 고객 PC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전자지갑이 자동 다운로드됨(이용기관 별도 조치사항은 없음)
- 웹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액티브엑스(ActiveX) 자동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수동설치 페이지로 안내되며, 일부 설치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로 문의 요망 📞

조합업무 거래 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약정체결 방법 (조합원사의 시간 및 경비절감)

조합원사가 직접 조합을 방문하여 한도거래용보증 채무약정을 체결하던 것을 2008. 7. 1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법을 도입 시행함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및 자택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법인(개인)및 대표자 개인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전자약정을 체결 할 수 있다.

1. 지점(영업소) 방문시

약정서식에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인감을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다 음 -

○약정인의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된 때에는 생략)

○연대보증인의 경우

- 대표자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 최다주식보유자 :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사본
- 법 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개 인 : 개인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와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이어야 함.

2.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시

약정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합 홈페이지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약정신청을 하면 연대보증인에게 이메일과 핸드폰으로 약정내용이 전송됨. 연대보증인은 내용을 조회한 후 동의할 경우 범용공인인증서로 약정 동의에 서명하면 정상적으로 약정신청이 완료되며 조합에서 약정을 승인함으로써 약정체결이 종료됨.

※ 전자약정 체결시에는 반드시 모든 인터넷 전자거래가 가능(전자입찰포함)한 법인(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전자약정 신청시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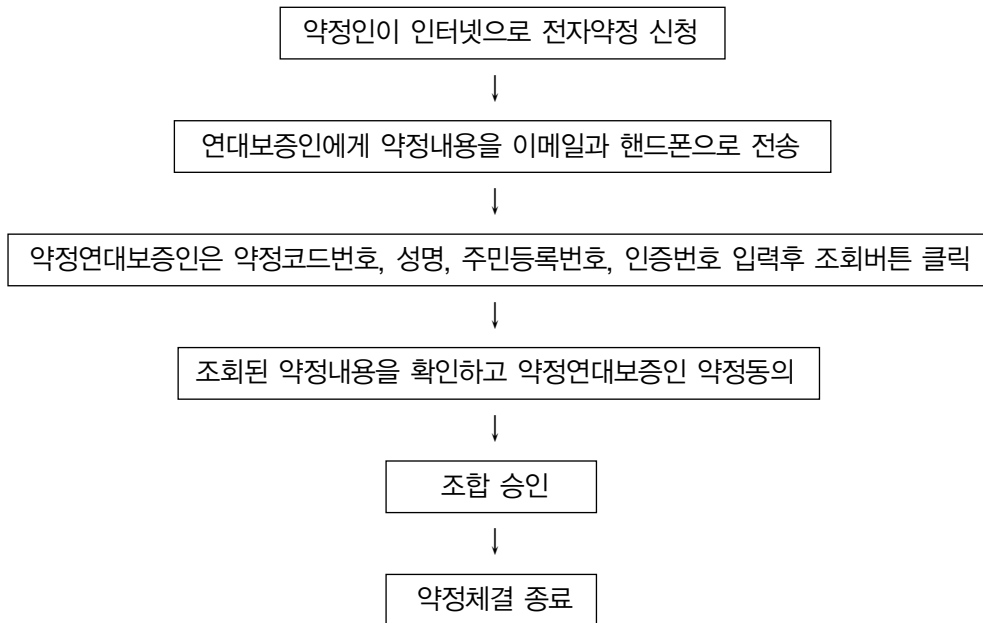
○ 약정인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는 범용공인인증서로 같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은 지점(영업소)에서 출력

○연대보증인

구분	약정인 대표자	최다주식보유자
개인	개인인감증명서는 개인용범용공인인증서로 같음	-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사본(모사전송가능) - 개인인감증명서는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로 같음
법인	-	-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사본(모사전송가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은 지점(영업소)에서 출력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로 같음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는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로 같음

〈약정체결 흐름도〉



○전자약정시의 효과

조합원은 조합방문에 따른 교통비절감은 물론 제출 서류 간소화로 증명서 발급비용절감 및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음. 🏠

근로자재해공제 업무

1. 근로자재해공제 업무

가. 도입배경 및 근거

○ 금융 및 보험시장의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조합은 보증·용자에 국한된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조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증·보험기법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근로자재해공제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 근로자재해공제사업 도입근거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이 가능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1항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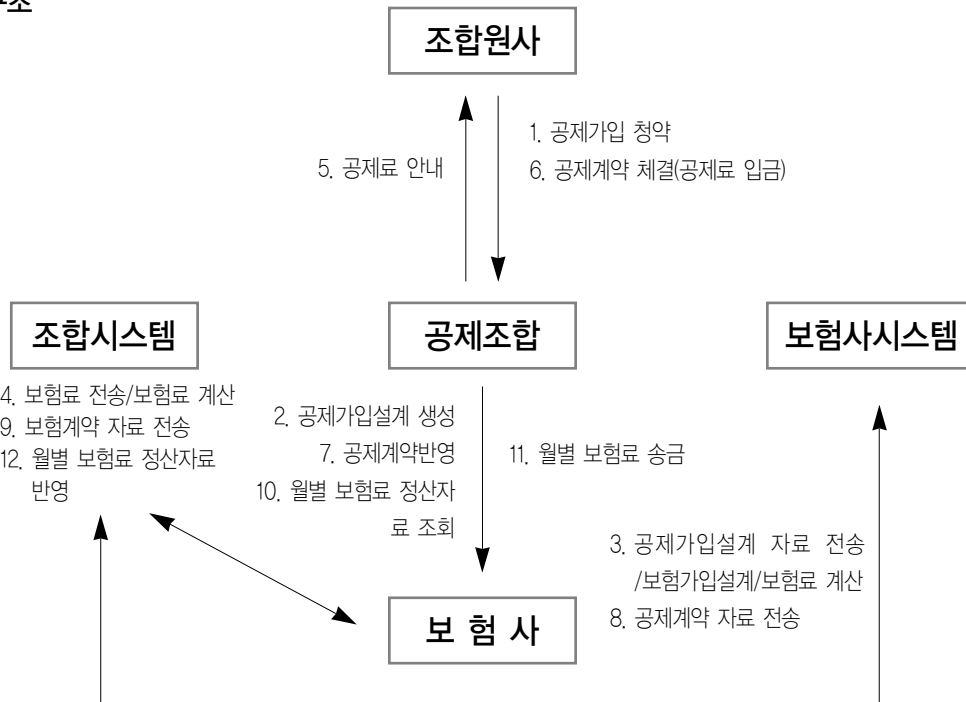
- 조합 정관 제47조 제1항

나. 정의

○ 근로자재해공제는 조합원사에 고용된 근로자(일용직포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공제상품입니다.

* 대표이사(임원)은 보상범위에서 제외됨.

다. 운영구조



○우리조합은 조합원에게 상품안내와 근재보험증권을 발급하고, 손해사정 및 보상처리는 국내 우량의 손보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운영함.

라. 조합원의 혜택

○조합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됩니다.
- 조합원사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보다 약 10% 절감된 보험료로 제공합니다.
○일원화된 조합 서비스(보증, 근재보험, 용자, 신용평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공으로 조합원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마. 가입대상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 발급범위

○조합원이 영위하는 업종중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면 전부 가능합니다.
- 건설관련 공사(설치포함), 기계기구제작,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두 포함됩니다.

사. 공제계약

(1) 계약의 종류

○공사장별 계약
- 공제계약자가 피공제자의 특정한 사업장에 대해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으로 공사계약, 구간계약, 개별계약이라고도 함.
○연간포괄 계약
- 공제계약자가 피공제자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포괄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으로 기간계약이라고도 함.

(2) 공제기간

○공사장별 계약
- 당해 사업장 건설공사(납품, 제조, 제작)등에 있어 공사(납품, 제조, 제작)기간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청약한 기간을 공제기간으로 함.
○연간포괄 계약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이 이와 다르게 청약한 경우에는 공제기간으로 함.
※공제기간은 청약일 이후에 개시됨을 원칙으로 함. 단, 착공일이 청약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이내인 경우는 무사고확인원을 징구하고 공제기간 개시일을 착공일로 소급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 경과후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음.

(3) 공제가입 보상한도액

-1인 당 : 1천만원 ~ 5억원 이내
-1사고당 : 1천만원 ~ 10억원 이내
: 공제가입 한도액 이내에서 조합원이 청약한 금액으로 함. 단, 공제가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가입할 경우 보험사의 인수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보상한도액은 공제기간중에 사고횟수와 관계없이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이 적용됨.

아. 공제로 구조

공제로 = 인건비 × 기본요율 × 보상한도인상계수 × 조정계수

(1) 인건비: 공제로 산정의 기초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상여금 등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금품을) 말하며, 주로 사업체의 연간노무비 또는 공사장별 노무비등을 말한다.

○공사장별 계약

: 해당공사의 총 예정 인건비로 현장직만 산출대상이 되며 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내역서 중 노무비 내역으로 하며, 산출이 어렵거나, 제출이 곤란할 경우 *계약금액(VAT제외)에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함.

*계약금액(VAT제외) :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으로 적용함.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적용기간 2008. 1. 1-2008. 12. 31)

- 일반건설공사인 경우 28% 적용
- 하도급공사인 경우 34% 적용

○연간포괄 계약

: 전체근로자의 연간포괄 총예정 인건비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내역이 산출대상이며, 사무직 인건비 산출은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에서 임원급여, 퇴

직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하여 산출하고, 현장직인건비 산출은 공무원가명세서의 급여, 상여금, 잡급을 포함(퇴직급여제외)함.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공제계약에 반영할 때에는 외주공사비에 노동부가 공시하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현장직 인건비와 합산하여 산출함.

(2) 기본요율 : 근로자재해공제증권 발급시 사업의 종류별로 판매하는 기본적인 요율로 우리조합은 주간사인 동부화재와 업무협정에 의해 책정함(시중보험사 보험요율의 약 90% 수준)

(3) 보상한도인상계수 : 1회의 사고발생으로 지급될 수 있는 1인당 · 1사고당 설정된 공제료의 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인상계수로 보상한도액에 따라 1에서부터 4.31까지 적용됨.

○보상한도 인상계수

(단위 : 백만원)

1사고당 \ 1인당	10	20	30	50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10	1.00													
20	1.15	1.60												
30	1.26	1.71	1.97											
50	1.41	1.85	2.10	2.33										
80	1.54	1.96	2.20	2.41	2.51									
100	1.67	2.07	2.30	2.51	2.62	2.67								
150	1.82	2.20	2.43	2.63	2.75	2.80	2.88							
200	1.97	2.33	2.55	2.75	2.88	2.93	3.01	3.26						
250	2.11	2.46	2.67	2.87	3.00	3.05	3.13	3.35	3.37					
300	2.24	2.58	2.78	2.98	3.11	3.16	3.24	3.43	3.46	3.63				
400	2.41	2.72	2.91	3.09	3.21	3.26	3.33	3.51	3.54	3.69	3.71	3.83		
500	2.57	2.86	3.03	3.20	3.31	3.36	3.42	3.59	3.62	3.74	3.77	3.89	4.01	4.11
1,000	2.98	3.21	3.34	3.48	3.59	3.61	3.65	3.81	3.83	3.92	3.95	4.08	4.20	4.31

구분	할인율	비고
계속계약할인	5%	갱신계약에 적용(연간포괄계약)
고액계약할인	1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 2%	손해보험사 단체보험료 1천만원 이상의 고액 계약에 차등적용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 4%	
	1억원 이상 : 6%	
연간포괄계약할인	5%	공제기간 1년기준 연간포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조정계수 : 계약자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손해율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시키는 계수로 최저 0.4에서 최고 2.95까지 적용됨.

※원도급공사인 경우 조정계수는 공제계약자의 손해율을 적용하고, 하도급공사인 경우 조정계수는 원수급인(원도급자)의 손해율을 적용함. 또한 연간포괄계약인 경우는 조정계수는 공제계약자의 손해율을 적용함.

※보상한도인상계수 및 조정계수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적용하고 있음.

(5) 기타요율

○단기요율 : 연간포괄계약 체결시 1년이하 기준으로 계약시 적용하는 요율로 활용되며, 공제계약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시 공제료환불에 사용하는 요율임.

○개별할인·할증율 : 보험사에서 산출하는 공제료가 50만원 초과시 적용하는 할인율로 사업의 종류별에 따라 최고 10% 할인율이 적용되고, 할증율은 적용하지 않음.

○추가할인율 : 아래와 같이 추가할인을 적용하며, 추가할인의 총합은 6%를 초과할 수 없음.

○공제료 분할납입 특약요율
연간포괄계약에 의해 산출된 공제료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입을 할 수 있음

납입회수	할증계수	납입방법
2회납	1.02	할증계수를 적용한 공제료를 납입회수 및 비율에 따라 분할 납입
4회납	1.03	

-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60%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5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40%해당액)
-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공제료의 35%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2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25%해당액)
제3회: 청약일후 5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20%해당액)
제4회: 청약일후 8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20%해당액)

자. 공제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구분	연간포괄계약	공사장별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필요서류	① 임금산출자료 (손익계산서 및 공사(제조)원가명세서) ② 산재보험보험료 보고서사본	① (하)도급 계약서 ② 공사비내역서(노무비 확인)	
노무비 적용방법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상여금,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를 인건비로 책정함 (인건비에는 임원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 총담금은 제외하고 직접+간접 노무비에 잡급과 상여금 합산) 하도급업체까지 담보할 경우 외주공사비의 34%를 노무비에 합산	공사비내역서상의 인건비 노무비는 직접+간접 노무비로 책정함. 단, 공사비내역서 미기재시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VAT제외)의 28%, 하도급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34%를 노무비로 책정(노동부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조정계수 적용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의 조정계수 적용	원수급인의 조정계수 적용
피공제자 입력방법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

차. 근로자재해공제약관 중 중요한 사항

○공제약관 중 약관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한번이상은 읽어보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 사항은 공제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위의 손해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조합은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제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약관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 합니다.
2. 피공제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약관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위 1., 2. 및 3.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기타 계약후 알릴 의무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제계약시 주의사항

1. 공제계약청약시 공제계약자의 법인인감,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함.(인터넷 공제청약시 제외)
2. 사업의 종류는 기본요율 산정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의 종류 예시표를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함.
3. 공제계약시 공제기간 산정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소급하여 산정할 수 있음.[공제계약자의 무사고확인원 징구(fax징구 후 보완가능)]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동부화재에서 인수 검토 후 청약할 수 있음

4. 공제기간산정은 연간포괄계약인 경우 초일불산입으로 청약일 24시부터 개시되며 공제기간종료일 24시까지로 하고, 공사장별계약인 경우는 착공일(또는 청약일) 24시부터 준공일 24시까지로 함.(단 착공일이 선일자인 경우 공제기간 개시일을 선일자 전날로 할 수 있음)
5. 타보험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변경계약에 대한 조합발급은 불가함.(조합에서 발급분은 신규발급분에 한해 가능)
6. 공사장별계약인 경우 도급(하)도급계약서상에 준공기일이 30일연장이나 60일연장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공제기간종료일에 맞춰서 기간산정을 함.
7. 공제로 분할납입업체는 기일 준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8. 공사명란은 최고 29자정도 입력이 가능하고, 공사명이 29자 이상인 경우는 추가기재사항란에 추가적으로 입력이 가능함.
9. 추가기재사항란은 공제계약자가 아래 2가지 사항 중 요구하는 경우 입력 가능함.
 - 1) 원수급업체(도급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 2) 하도급공사인 경우 원수급인을 공동피공제자로 요구하는 경우
10. 공사장별계약시 도급(하도급) 계약서상 노무비(인건비)내역이 없을 경우 인건비(노무비)산정은 공사도급(하)계약서상의 계약금액(VAT제외)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로 적용함.

파. 보상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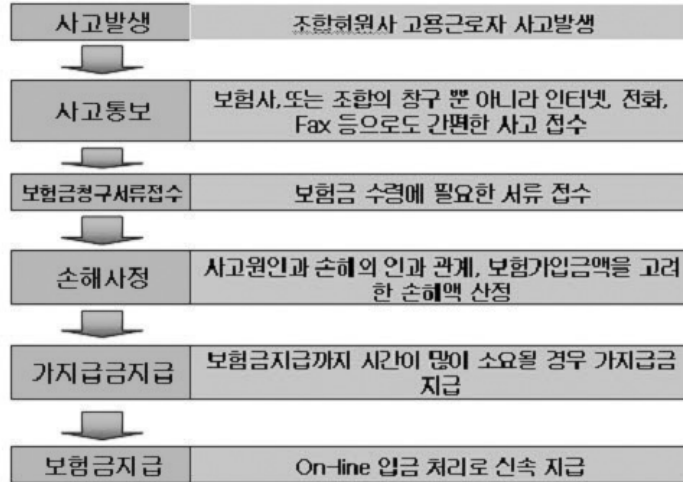
○우리조합은 국내 우량의 보험사와 업무협정을 통

보상처리절차

공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손해사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직접 보상처리해 드립니다.

보상처리 흐름도

- 사고 접수 전화: 1588-0100
-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보험증권사본
 - 산재 급여 지급 확인원
 - 근로계약서
 - 공사 (하)도급 계약서
 - 임금대장
 - 휴유장애 진단서



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를 보장합니다.

지급되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보험사고 접수에서 보험금지급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산재보험 보상의 초과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최종보험금이 확정되거나

○사고시 상담 및 분쟁 조정

동부화재 콜센터: 1588-01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0 동부금융센터 ☎



건강
상식

물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이유?

우리 몸이 물과 술을 흡수 하는 과정은 판이하게 다르다. 술의 경우 일단 입에 들어가면 입과 목구멍에서부터 흡수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술이 위에 들어가면 보통 20% 정도의 알코올이 흡수된다. 나머지 80%도 소장에서 빠른 속도로 흡수돼 술을 마신 지 불과 20분쯤 후면 알코올이 몸의 모든 세포에 완전히 퍼진다. 반면, 물은 어떨까? 물은 위에서는 거의 흡수되지 않고, 소장에서 80%, 대장에서 20% 흡수된다. 마신 물이 소장에 넘어가기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알코올은 소변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자주 화장실에 드나들게 되고, 체외로 빠져나간 소변만큼 계속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물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두뇌의 보상센터(reward center)때문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킹스턴(Raynard Kingston)박사에 따르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두뇌의 보상센터가 가동되고, 이 보상센터가 가동되면 자꾸만 술을 더 마시고 싶어진다. 알코올에 중독 되면 두뇌의 도파민 분비기능이 둔해지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쉽고, 이런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꾸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최고 몇 리터나 되는 술도 마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물은 같은 자리에 앉아 1.8리터 이상 마시기가 힘들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 사전」 중에서